

2018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2018. 1



I.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 제외
-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2.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3.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4.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 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 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참고3]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용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1월 15일 ~ 1월 19일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용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사업성 평가시 기술 및 제품경쟁력은 다음사항을 포함
 -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보유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주력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을 평가
 - (대체재 위험 및 모방난이도)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재 위험과 기술개발의 모방난이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II.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용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보증인(실제경영자)”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제외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금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 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권리침해사실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사업장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자가주택 제외) 3.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div>

◇ 대출제한대상 기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보증인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div>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7. 법인실제경영자 연대입보 부적정	- 법인 대출의 경우, 보증인(실제경영자)이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3. 지분 30% 이상 보유자 4. 현장평가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한 자 </div>
8.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9. 한계기업	-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한계기업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단, 제2호, 3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div>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 </div>

◇ 대출제한대상 기준

	<p>(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p> <p>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p> <p>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p> <p>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p> <p>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p>
11.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2.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3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지원 가능
13. 매출액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III. 제출서류

□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공통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자금)	대출신청작성서류	- [작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별표1>	1부
		- [작성] 대출신청서 <별표2>	1부
		· 사업현황 <별표2-1>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 2-2>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 2-3>	1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용자) 윤리준수 약속 <별표2-4>		
	대표자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1부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급일자가 1개월 초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제출	택1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공통 (직접 대출)	세금 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 확인 * 배우자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1.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분리주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3.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1개월 이내)
	금융 거래 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 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 (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단,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융권 금융거래 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 2회 제출(심사기간 중 연체확인) 4. 담보현황 표시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 서 기준일 확인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제출용”만 인정 3.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추가 제출 4.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거주주택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4. 상동 5. 배우자 분리주거시, 배우자 거주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택1하여 제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사본제출시, 접수 후 현장실사시 평가자가 원본 확인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경우 제출 2~3. 상동	
대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 (1개월 이내)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차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택1 (1개월 이내)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법인 연대보증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부 (1개월 이내)
	시설 자금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1부

대출	◇ 검토사항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해당서류 각1부	
추가 (한도우 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 체)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사본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증 (근로복지공단)	택1
	고용 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1개월 이내)
	수출 실적 증빙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택1 (1개월 이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부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공통 (현장 평가)	①사업성 증빙	- 지식재산권	해당서 류 각1부
		- 수상(인증)실적	
②기타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ISO, HACCP 인증 등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IV.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75, 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스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2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 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함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내(남악리)	목포시,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대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8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5층 505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대전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충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경명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교동)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을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충청지역본부

[붙임1] 심사전담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심사전담센터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강원지역본부 (4개 전담센터)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남부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북부
	춘천센터	(033)243-1950	강릉 원주 삼척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5개 전담센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부산남부 부산동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
	울산센터	(052)260-6388	-
	창원센터	(055)275-3261	진주 통영
대구경북지역본부 (4개 전담센터)	김해센터	(055)323-4960	-
	대구남부	(053)629-4200	-
	대구북부	(053)341-1500	-
	구미센터	(054)475-5682	안동
경기인천지역본부 (8개 전담센터)	포항센터	(054)231-4363	경주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북부
	부천센터	(032)655-0381	-
	수원센터	(031)244-5161	평택 안산
	화성센터	(031)8015-5301	-
	안양센터	(031)383-1002	광명
	의정부센터	(031)876-4384	-
	성남센터	(031)705-7341	-
광주호남지역본부 (3개 전담센터)	고양센터	(031)925-4266	-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서부 광주중부
	순천센터	(061)741-4153	여수 목포
대전충청지역본부 (2개 전담센터)	전주센터	(063)231-8110	남원 익산시 고창 장흥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남부 산주 안산
	청주센터	(043)234-1095	충주 제천 음성 옥천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분	확인서류	비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산정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확인기준 "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 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 ~ '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 ~ '18.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사업계획서상의 매출액 *** 간이과세제(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 (매출액 기준) [별첨1] 참고
② 상시근로자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등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붙임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조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조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 업력(사업기간)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 분기말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휴주점업
56212	무도유휴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표준산업분류	업종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휴주점업(56211) 및 무도유휴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C.제조업 분류 (10-33)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지원제외업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